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도드람양돈농협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와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와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이하 중앙자활센터, 도드람이라고 한다)간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및 양질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이에 관한 협약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당사자는 상대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추진한다.

제3조(협력업무)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한다.

① 중앙자활센터는 협약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 및 지침의 제·개정, 협력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자활센터의 발굴, 위탁운영점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설명 및 교육·컨설팅, 직무분석, 사업모니터링, 추가 연계사업의 개발업무 등을 추진한다.

② 도드람은 위탁운영점 개발 및 지원, 경영기법의 전수, 매장운영교육, 모니터링 및 직무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우수매장 및 종사자 포상 등을 추진한다.

③ 기타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자료의 교류를 위해 협조한다.

제4조(실무협의회의 구성 운영) 협약당사자는 필요시 각 주체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이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드람의 위탁운영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협약 당사자 일방이 협약기간 만료 이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상대기관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기타사항) 중앙자활센터는 광역자활센터에, 도드람은 (주)도드람FC에 상호협의를 사항에 대하여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협약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월 12일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원장 심성지



도드람양돈협동조합  
조합장 이영규

